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생산수단’으로만 존재할 따름이에요.”

윤박 선전위원

지난 7월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20대 노동자는 일을 시작한 첫날 폭염 속 옥외노동을 견디다 못해 지역만리 땅에서 숨을 거뒀다. 7월 24일에는 포항의 야산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경련 증상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갔으나 결국 숨졌다. 기후재난 시대, 이 땅의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더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였다. 이주노동자 쉼터 ‘지구인의정류장’의 김이찬 활동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왜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사는 걸까요? 이 폭염 속에서 정말이지 덥다는 말로는 표현 안 될 만큼 힘들 텐데요.

이주노동자가 머무는 숙소는 논밭 중간에 덩그러니 서 있는 가건물인데다가 외따로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 치안이나 방화 등 여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근

로계약서에는 숙박시설이 ‘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비닐하우스 안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 대부분이에요. 그 비닐하우스라는 게 원래 목적 자체가 보온을 위한 거니까 한 여름에 엄청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름이면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어가거든요. 퇴근 뒤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만큼 온도가 떨어진 밤 9시가 넘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혹한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에어컨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선풍기마저도 노동자가 직접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지구인의정류장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주로 캄보디아 사람들인데, “본국 캄보디아보다 한국 여름이 더 덥다”고 토로합니다.

캄보디아, 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운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더 덥다고요?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캄보디아

의 가옥은 대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땅에서 높게 기둥을 세워 그 위에 집을 지어요. 바람도 통하고, 지열로부터도 보호하게끔요. 햇빛을 막을 수 있게 차양을 길게 해 놓고, 그러면서도 창문이 많고 천장을 높게 해서 환기가 잘되게 하고요. 에어컨이 없어도 바람이 잘 불어오면 27~8도는 유지된다고 하네요. 캄보디아가 덥긴 해도 한낮에 그늘지고 바람 부는 집 안에서는 그렇게 덥지는 않다고 해요. 주변에 숲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주노동자가 사는 비닐하우스는 딱딱 막아놔서 통풍이 잘될 턱이 없죠. 비닐하우스가 ‘집’이라면 그 안에 ‘방’을 만들어야 하니까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을 세워요. 이 역시 환기가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우리 고향보다 더 더워요. 너무 더워 죽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요.

김이찬 활동가가 몇 장의 근로계약을 보여줬는데, 대동소이한 내용이였다. 농사일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계약서에는 월 2회 휴일이 명시되어 있다. 매주 일요일에도 쉬지 못한다는 것이다. ‘약덕 사업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방치임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숙소는 상황이 참 안 좋지만, 그래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소정의 노동시간은 보장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전에는 간혹 돈을 안 받고 숙소를 내주는 농장주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농장으로 이주노동자가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숙소비를 받는 농

장주가 항의하는 거죠. 결국 전부 다 비슷한 수준으로 숙소비를 받게 된 겁니다. 한때 숙소를 쓰는 비용으로 이주노동자가 한 달에 30만 원가량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급여를 주면서 다시 돈을 받아야 하니까, 이주노동자가 ‘못 준다’며 버티면 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지요. 급여에서 제하고 주는 건 또 바로 증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숙소 제공을 대신한 것”이라며 ‘무급노동’을 더 시켜요. 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월 226시간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12시간 이상 밖에서 일해야 해요. 휴게시간을 포함한다고 해도 매일 2시간 이상이 무급노동으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주노동자 월급은 18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요. 충남 금산과 경기도 양평, 이천 일대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죄다 비슷해요.

불법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나요?

노동부에서 이를 감독해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손 놓고 있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부는 표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기준 8시간 노동”이라고 하지만, 실제 근무 시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허위로 기재해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합니다. 매일 몇 시에 일을 시작해서 몇 시에 마쳤다고 노트에 기록하는 이도 있어요. 이 노트를 제출해도 “사장 서명이 없으니 못 믿겠다”며 무시되기 일



▲ 2025.08.17. '지구인의정류장' 사무실에서 인터뷰 도중, 부당하게 해고당한 캄보디아인 여성노동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김이찬 활동가. 캄보디아인 여성노동자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절박함을 호소했다.

쭈쭈. 결국 착취가 감추어지도록 제도가 설계된 셈입니다. 이건 모두 '고용허가제' 때문인데,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체류와 고용을 모두 지배합니다. 노동자가 “왜 8시간 계약인데 12시간 시키냐”고 항의하는 순간, 해고되어 불법체류 신분이 되거나 즉시 쫓겨날 위험에 처합니다. 항의와 권리 주장은 곧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되지요.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단순기능인력으로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3년간 특정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허용하면 최대 1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여 4년 10개월까지, 그 뒤 고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취업하면 합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사업장을 나온 뒤 4개월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강제 추방되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 과도한 노동강요, 근무지 변경 제한, 폭언과 신체적 괴롭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나라에 따라 수천만 원의 비용을 업자에게 지불해야 한국으로 일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느니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기를 택하기도 한다.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약 38만 명가량으로 추정한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폭염기에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한다고 폭염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 시작했으니, 아직 현장에서는 대충 무시하고 휴식 없이 일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물량으로 압박해요. 깃잇은 하루 수확량이 34킬로그램 정도 돼야 해요. 수확량이 모자라면 “이거 못 채워? 너 그럼 임금 깎 거야.” 하면서 압박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작업중지권도 있고, 휴게 장소가 어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서도 어디 지켜지겠어요? 쉬겠다고 했다가는 바로 쫓겨날 수 있는데요.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농업은 그런 현실이고, 제조업은 좀 어떤가요?

제조업 사업장은 주로 도시 공단에 밀집해 있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좀 나아요. 이주노동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집단으로 항의할 수도 있죠. 얼마 전 광복절에 한국인 정주노동자는 다 유급휴가로 쉬었잖아요. 이주노동자들이 그날 설령 쉬지 못하고 일을 했더라도, 나중에 알고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시골에서 일하는 농업은 더 고립되어 있어서 노동권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는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인이라고는 사장과 야채가게 주인밖에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깃잎 34킬로 따는 생산수단’으로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몇 명씩 거주하는 비닐하우스도 농장 한가운데 있어서 인가로부터 고립되어 있잖아요. ‘일-밥-잠’이 한국에서 생활의 전부입니다.

4년 전, 『일터』 통권 203호(2021. 2)에서도 다뤘던 캄보디아 노동자 속행 씨의 죽음도 맥락을 같이한다. 속행 씨의 숙소는 누전차단기가 계속 떨어졌다고 한다. 그 집은 다섯 명에서 자다가 세 명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먼저 나갔고, 결국 두 명이 남았다. 둘이서 한 사람이 나가서 차단기 스위치를 올리고 돌아오면 떨어지고... 또 한 사람이 나가서 올리고 돌아오고 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다 그 동료가 친구 집에 가면서 속행 씨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으나, 속행 씨는 ‘괜찮아, 여기 있을게라며’ 숙소에 남았다. 다음 날 오후에

▲ 어느 캄보디아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정부에서 발급한 '표준근로계약서'인데도 '월 2회' 휴일이 눈에 띈다.

돌아온 동료가 차가운 주검이 된 속행 씨를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한국 농업은 이미 이주노동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주체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 그 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고용허가제를 완전히 개혁해야죠.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구조를 깨고 노동자의 노동권·이동권·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새 정부에서 노동부가 하겠다는 게 많은데, 이주노동자를 위한 일도 많이 해야죠. **알터**